

# 자 매 결 연 협 약 서

대한민국 국립 전남대학교

미합중국 뉴욕 주립대학교 (스토니 부룩)

3

협약상의 일방대학은 타방대학으로 부터 매년 사전에 합의된 수의 교수들을 적의한 자격을 주어 1년을 기간으로 초청할 수 있다. 주택, 봉급등 초청에 수반되는 재정상의 문제는 개개인을 기준으로 협의되며 양대학의 승인을 요한다.

방문교수의 수 및 방문기간은 재정상의 조건, 초청대학의 필요, 그리고 초청대학의 승인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4

뉴욕주립대학교(스토니 부록)는 전남대학교 교원들이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거나 또는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원 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전남대학교 교원들은 뉴욕주립대학교(스토니 부록)의 대학원 조교로 선임될 수 있다.

5

전남대학교는 뉴욕주립대학교(스토니 부록) 교수들에게 강의 및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전남대학교는 뉴욕주립대학교(스토니 부록)의 방문 교수들에게 주택과 각기 그 직위와 교수 경험에 상응하는 월급을 제공한다. 월급은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법상의 봉급 등급을 적용한다.

6

협약상의 일방대학교 학생이 1 학사년도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타방대학교의 정규과정 또는 관계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양대학교로부터 교환계획에 참여하는 전체 학생수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7

양대학교가 제출하는 교환 학생 및 교수 명단에는 교환 당사자들이 방문대학교에

서 이수 또는 수행코자 하는 교과목 명세 또는 연구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8

양대학교의 총장은 각기 전남대학교-뉴욕주립대학교(스토니 부록) 자매결연 관계 업무를 조정, 관리하기 위한 책임자를 임명한다. 추천된 교환 후보자의 학문연구 배경, 실적 및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 대학교에 제공하는 것은 양대학교 자매결연 책임자의 소관이다.

9

매년의 교환 계획은 그 전년 봄에 준비, 검토된다. 양대학교는 교환 학생 및 교수의 지원을 위하여 급료 형식으로 지불이 가능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일정 기간동안에 제공이 가능한 교환기회 및 특별한 교환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각기 자매결연 책임자를 통하여 교환한다.

10

교환교수 또는 학생이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교환 후보자들의 명단과 함께 의사의 건강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11

전남대학교에서 선발된 교환교수 및 학생은 뉴욕주립대학교(스토니 부록)에서 수학 및 연구를 감당해 내는 데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남대학교에서 수학을 위하여 선발된 뉴욕주립대학교(스토니 부록)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충분한 한국어 실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뉴욕주립대학교(스토니 부록)와 전남대학교는 방문교수, 학생들을 위하여 언어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12

전남대학교와 뉴욕주립대학교(스토니 부록) 자매결연 관계의 기본으로서 초청대학교는 호혜적 원칙에 입각하여 교환 학생의 수업료와 관계된 각종 납부금의 면제를 합의한다. 숙식과 여비를 포함한 기타의 경비는 파견대학교로부터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13

교환 교수 및 학생의 수는 매년 전남대학교와 뉴욕주립대학교(스토니 부록)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 수는 양 대학교가 본 교환 계획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재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4

양 대학교의 본 협약상의 의무는 교환 당사자 본인에 한하며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동반에서 초래되는 추가부담은 당사자 개인의 책임이다.

15

본 협약은 협약 조인일로부터 3년 기간동안 체결된다. 본 협약은 양 대학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16

본 협약에 대한 모든 수정은 양 대학교의 승인을 요한다. 양 대학교는 9개월 이전 통고를 조건으로 본 협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17

본 협약은 양 대학교의 동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교환 계획 참가자들에 대한 추후의 논의에 의한 증보가 가능하다.

18

양 대학교는 상호 이해와 우호의 증진을 위하여 연극, 무용, 음악분야, 문화단체의 교환을 장려한다. 그리고 양 대학교의 총장 및 행정요원들의 초청은 상호 협의

에 의하여 그 기회를 마련한다.

19

뉴욕주립대학교(스토니 부룩)에 있는 전남대학교의 교수 학생이, 예를 들면 농학분야에서와 같이 적의하다고 생각된 때에는 뉴욕주립대학교의 타 자매 캠퍼스에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20

양 대학교는 본 협약의 조건들이 대한민국의 문교부 장관과 뉴욕주 법에 따라서 뉴욕주립대학교(스토니 부룩)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데 양해한다.

(서명)

존 에이취 마버거 III  
뉴욕주립대학교(스토니 부룩)총장

1982년 8월 13일

(서명)

오 항 기  
전 남 대 학 교 총 장

1982년 8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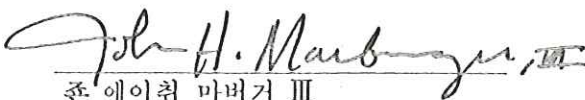
부 칙

양 대학교는 1982년 8월 13일에 조인된 본 협약을 연장하며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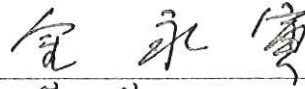
제 1 조 제 1 호의 「기초의학분야」를 「의학분야」로 변경한다.

제 2 조의 「전남대학교는 사회과학연구소 내에 미국 연구 센터를 설립하는데 합의  
하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 부록)는 한국 연구 계획을 개발할 것을 합의한다」를  
「전남대학교는 미국학연구센터를 설립하는데 합의하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 부  
록)는 한국학 과정을 설립하는데 합의한다」로 변경한다.



존 에이취 마버거 III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 부록) 총장



김 영 인

전남대학교 총장

조인일 March 19, 1985

조인일 1985년 3월 19일